# 어르신의료복지시설 운영(요양)

# 1 기본현황

### 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
사업기간	☑연례반복	
사업내용	○ 장기요양등급이 있는 어르신들의 안 요양시설 운영을 지원	정적인 노후생활을 위해
사업비	6,250,733천원 (국비)	(시비)6,250,733천원
(당해년도)	기타 (예산 외) 〔구비〕	(기타)

### 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23	김진영 2133-7438
복지정책실	어르신복지과	김영란 2133-7400	송미정 2133-7423	유형 2133-7427

<sup>※</sup>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# 2 예 산 설 명

## 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	(x-)	(x-)	(x-)
	6,730,534	6,250,733	△479,801	△7
사무관리비	(x-)	(x-)	(x-)	(x-)
	0	50,000	50,000	0
민간위탁금	(x-)	(x-)	(x-)	(x-)
	2,776,675	2,395,685	△380,990	△13
사회복지사업보조	(x-)	(x-)	(x-)	(x-)
	3,953,859	3,805,048	△148,811	△3

# 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		
사무관리비	○ 서울형 인증 지표 개발 50,000,000원	=	50,000천원		
	○ 시립노인요양시설(11개소)	=	2,395,685천원		
	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2명*60.880원*365일	=	711,079천원		
	- 비급여액(식비)지원 560명*1,000원*365일*3식	=	613,200천원		
	- 춘계부식비 및 김장비 560명*14,000원	=	7,840천원		
	- 추가 인건비(5명) 175,369,000원	=	175,369천원		
	- 종사자처우개선비 669,600,000원	=	669,600천원		
미기이티크	- 갈곳없는 어르신 보호	=	74,877천원		
민간위탁금	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명*60,880원*365일	=	66,664천원		
	▷ 비급여(식비)지원 3명*2,500원*365일*3식	=	8,213천원		
	- 위문금 지원 560명*10,000원*4회	=	22,400천원		
	- 학대피해노인 일시보호(중계, 엘림) 50명*60,880원*30일	=	91,320천원		
	- 시설 종사자 워크숍	=	30,000천원		
	▷ 시설종사자 교육비 1,000명*15,000원	=	15,000천원		
	▷ 시설종사자 연수비 1,000명*15,000원	=	15,000천원		
	○ 구립 법인 노인요양시설(69개소)	=	3,025,048천원		
	-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30명*60,880원*365일	=	666,636천원		
사회복지사업보조	- 비급여액(식비) 지원 1,400명*1,000원*365일*3식	=	1,533,000천원		
	- 춘계 부식비 및 김장비 850명*14,000원	=	11,900천원		
	- 종사자처우개선비 604,800,000원	=	604,800천원		
	- 갈 곳 없는 어르신 보호	=	174,712천원		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			
	▷ 등급외 요양수가 지원 7명*60,880원*365일	=	155,549천원		
	가 8 00,000 년 003년 ▷ 비급여(식비)지원 7명*2,500원*365일*3식	=	19,163천원		
	- 위문금 지원 850명*10,000원*4회	=	34,000천원		
	○ 노인요양시설 인증 780,000,000원	=	780,000천원		

## 3 사업설명

#### □ 사업목적

○ 65세 이상 저소득 및 거동불편 어르신을 요양시설에서 거주하며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에 기여

#### □ 사업근거

- 노인복지법 제 47조(비용의 보조) 및 동법 시행령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4조(비용의 보조)
- 2018년 노인보건복지사업 안내(보건복지부 지침)
- 2018년 노인의료복지시설 운영지원 계획(어르신복지과-3650,'18. 2. 23.)

#### 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 1 ~ 12월
- 지원대상 : 노인요양시설 80개소 지원
  - 총 525개소 중 시립,구립,비영리법인 운영시설에서 수급자 보호 시
- 지원내용
  - 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이전 입소 등급외자 지원 3등급 요양급여
    - · 등급외자수가 지원비 : 60,880원/일(3등급 수가. '18년 55,780원 대비 평균 상승치 9% 상승 반영)
  -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지원
    - · 입소자 중 기초수급자 비급여 항목(식비 등) : 1인 1식 1,000원
    - · 위문금 : 분기별 1회 10,000원(설날, 어버이날, 추석, 연말)
    - · 춘계부식비 : 1인 연간 7,000원
    - · 김장비 : 1인 연간 7,000원
  - 시립시설 추가 지원 종사자 인건비: 3개소, 5명
  - 갈곳없는 어르신 보호: 등급외자 요양수가 및 비급여(식비)

- 종사자 처우 개선비
  - · 기초수급자우선입소시설(16개소) 및 시립노인요양시설(5개소) 종사자
- 종사자 워크샵

#### □ 추진경위

-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('08. 7월) 관련 노인요양시설 운영 및 예산조치 계획(2008.7.4.)
- 갈 곳 없는 등급외 판정 기초수급자 어르신 보호(2011.8.11.)

#### □ 2019년도 추진일정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6,250,733	
기본계획 수립	2019.01~2019.02		
보조금 신청 및 집행	2019.02~2019.12	6,250,733	분기별 교부

(단위 : 천원)

# 4 사업효과

### □ 최근 3년 추진실적

2016년도	○ 요양시설 74개소 운영비 지원 ○ 노인요양시설 인증 확대 실시 -기존 10인이상시설 →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(10인미만 시설)까지 확대
2017년도	○ 요양시설 77개소 운영비 지원 ○ 서울형 인증시설 지원강화책 마련(지원금 증액, 용도확대)
2018년도	○ 요양시설 77개소 운영비 지원

### □ 향후 기대효과

- 어르신 의료복지시설 운영비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시설운영 지원
- 무의탁 저소득 어르신을 보호하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여 노후의 안정된 생활 도모

## 5 회 근 3 년 결 산 현 황

### (단위 : 천원)

연도	최종예산	전년이월	예산변경	예산현액	집행액	차년이월	집행잔액
2015	(x-) 5,990,000	(x-)	( <sub>X</sub> -)	( <sub>X</sub> -) 5,990,000	(x-) 5,299,000	( <sub>X</sub> -)	(x-) 691,000
2016	(x-) 6,050,000	(x-)	(x-) 0	( <sub>X</sub> -) 6,050,000	(x-) 5,324,000	( <sub>X</sub> -)	( <sub>X</sub> -) 726,000
2017	(x-) 6,105,000	(x-)	(x-)	(x-) 6,105,000	(x-) 5,372,000	(x-)	(x-) 733,000